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다.

1 지원 대상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교육급여(중위소득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가구의 7~18세(2006.1.1. ~ 2017.12.31.) 한국 국적의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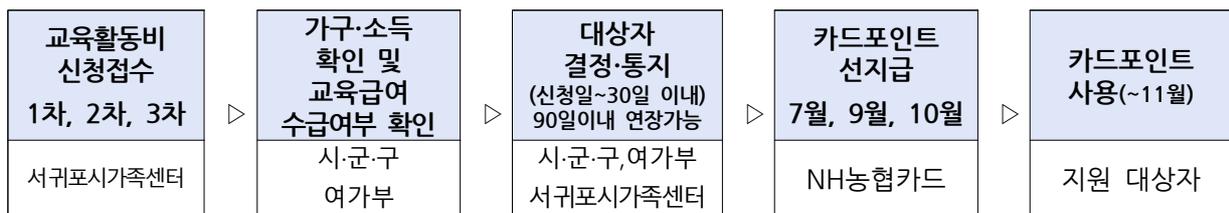
※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 중복수급 불가.

2 지원금액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 ※ 지급시기 : 7월(5~6월 신청자), 9월(7~8월 신청자), 10월(9월 신청자)
- ※ 지급방법 : NH농협카드 카드포인트 연 1 회

3 신청안내



- 신청기간 : 1차 - 2024. 5. 2.(목) ~ 6. 30.(일) 평일 10:00~17:00
 2차 - 2024. 7. 1.(월) ~ 8. 31.(토) 평일 10:00~17:00
 3차 - 2024. 9. 2.(월) ~ 9. 30.(월)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

- ① 제출서류 및 발급 방법 확인
- ② 신청서 작성(홈페이지 다운로드) :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등
- ③ 전화상담 후 방문 접수(구비서류 지참)

※ 접수장소 : 서귀포시가족센터(서호남로 12) 2층, 교육실 2

④ 교육활동비 인정범위

- 교육활동비 인정범위는 다음 항목에 한정
 - (학업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등
 - (진로활동)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등
- 반드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하며, 부정 사용 시 환수 예정
 -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상품 권·성인용품 등의 사용 제한
 - ※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교육활동비 카드포인트 사용 범위' 첨부 확인

⑤ 다문화가족 확인 및 소득확인

- 다문화가족의 한국국적 자녀(7세 ~18세 이하)와 생계와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
 - 연령기준 : 2006. 1. 1. ~ 2017. 12. 31.이전 출생자.
 - 학생은 학교급별,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나이 기준으로 지원.
 - ※ 나이기준 :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 ※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가능(별도 구비서류 없음)
- 소득확인(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여 수급 대상자 여부 판단.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판단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3인	4,175,000	167,876	123,611	169,859
4인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5인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6인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7인	8,515,000	304,986	271,091	314,423
8인	9,412,000	336,105	303,332	348,552

-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현금성 지원 사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교육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고 차액분을 지급함.
- ※ 신청 순으로 하되 필요시(예산 범위 초과 등) 우선순위 적용
학교 밖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중위소득 기준 저소득 순위 가구 자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자녀가정(2인 이상), 가구원에 장애 또는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사항	1.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① 지원신청서 :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한글파일 다운로드 후 ② 사전 작성 후 제출 원칙이며 센터 방문 시 작성 가능 ③ 한글 신청서로 작성	가족센터 홈페이지	
	2. 신청인 신분증 ※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3.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1부 ※ 국적취득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온라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발급대상자 : 자녀 기준(개별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6자리) 전부공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온라인)	
	5. 주민등록등본 1부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 등본상 기재 ※ 세대원,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6자리) 전부공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24(온라인)	
	6. NH농협카드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의 NH농협카드 ※ 없는 경우 발급해야 함 ※ NHBC카드, 보조금카드, 지역화폐카드 등 사용불가	농협은행, 농축협	
소득확인 필수제출 ※소득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가. 건강보험료 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월분부터 인정)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건강보험공단 (온라인/팩스/방문)
	나. 소득이 있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② 실제소득 증빙자료 - 소득금액증명(202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건강보험공단 (온라인/팩스/방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세무서(방문/팩스) 홈택스, 정부24(온라인)
	다. 프리랜서, 일용직 등 소득금액증명 발급×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급여(월급)명세서 등	-
	라. 소득이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득 없음)	①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2022년, 2023년(7월부터발급가능)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건강보험공단 (온라인/팩스/방문) 주민센터(팩스신청) 세무서(방문) 홈택스, 정부24(온라인)
기타 필요서류 (해당자 제출)	대리 신청의 경우 (3촌 이내 혈족만 가능)	① 법정대리인동의서&위임장, 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② 공통사항 서류	가족센터 홈페이지
	부와 모가 사실혼 관계인 경우	① 사실혼관계 확인서 ② 각종 증빙서류(본인이 증명)	가족센터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이 이혼, 재혼 등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명)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온라인)

※ 필요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7] 교육활동비 지원 사용제한 리스트

사용제한 업종현황

구 분		사용제한 업종
유형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각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교육활동지원비 사용제한 리스트

순서	업종명	순서	업종명
1	일반주점	33	기타 보험
2	주류판매점	34	케이블 T V
3	단란주점	35	인터넷이용료
4	유흥주점	36	공과금
5	나이트클럽	37	전화요금
6	노래방	38	전기 수도
7	안마시술소	39	관리비
8	유흥기타	40	우체국(우편요금)
9	전자상거래상품권	41	국세
10	전자상거래PG상품권	42	국세(특수주기)
11	전자상거래오픈마켓상품권	43	지방세
12	상품권	44	도시가스
13	농촌사랑상품권	45	단체회비
14	성인용품점	46	기부금
15	온누리상품권	47	기부금(본부정산용)
16	지자체발행상품권	48	RF교통기관(수수료선취)
17	면세점	49	RF교통기관(수수료후취)
18	총포류판매점	50	RF교통기관(대표가맹점)
19	골프장	51	후불하이패스
20	골프연습장	52	RF유료도로.터널
21	스키장	53	RF공항버스
22	종합스포츠센터	54	RF기타운송수단
23	당구장	55	RF자동판매기(기기판매)
24	레포츠클럽	56	문화누리카드
25	이벤트업	57	(상품권)정산용가맹점
26	외국인전용카지노	58	바우처(Voucher)
27	요가	59	바우처(가사간병)
28	비디오방/게임방	60	아이사랑어린이집
29	피부미용원	61	내일배움카드 온라인
30	찜질방/목욕탕/사우나	62	현금영수증
31	생명보험	63	포인트승인신청
32	손해보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실시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정보·가족관계등록정보, 소득금액증명(사실확인증명 포함), 건강보험, 수급 금융 계좌번호, 카드정보, 연락처, 교육활동비 카드 이용내역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보조금의 중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유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교육활동비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여성가족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NH농협카드,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수급자격 확인, 교육활동비 지급 관련 제반 행정처리, 가족서비스 등 각종 지원 정보에 대한 안내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에 관한 내용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지원 중단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교육활동비 신청이 제한됩니다.

3.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실시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5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보조금의 중복,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유 필요한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교육활동비 지원지원비 신청이 제한됩니다.

변경·정지·중지·상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유의 사항 **확 인** (✓ 체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을 준용하여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의 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교육활동비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향후 동 사업이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동 될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가족센터장 귀하

신청 시 구비·제출서류 안내 **제출하는 곳**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아동의 모 또는 부 확인), 3. 사실혼관계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증명서류 포함),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과 모 각각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 6. **실제소득 증빙자료 등**
- 가족센터